

예 산 총 칙

2021년도 추경 3 회

제 1 조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618,951,180	18,568,535
일반회계		540,762,348	16,222,870
특별회계		78,188,832	2,345,665
기타특별회계		78,188,832	2,345,665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1,196,697	35,901
	주차장특별회계	558,895	16,767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79,734	5,392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27,975,037	839,251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347,840	10,435
	치수사업특별회계	402,514	12,075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10,280	308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47,484,851	1,424,546
	도시개발특별회계	32,984	990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일반예비비는 1,711,250천원으로 한다.
일반회계 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 1,674,248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29,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의 2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재무활동경비,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간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 등은 상호 이용할 수 있다.